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활권공원에 대한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6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활권공원에 대한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18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활권공원에 대한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안 제1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8조의2(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노후 공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u> <u>2. 공원시설의 재배치 등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u> <u>3. 보행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생활권공원의 안전관리 및 이용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2에 따른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도시공원¹⁾을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생활권공원²⁾’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각 목 생략)

주거지 등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공원은 도시민의 휴식 및 건강·정서 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생활 기반시설로서,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된 1990년대를 전후로 급격히 증가³⁾하였음.

이에 조성 시기부터 30년이 경과한 생활권공원이 33.6%(2026년 6월말 기준)에 달하고 생활권공원의 물리적 확충도 일정 수준에 도달⁴⁾하여, 생활권공원의 신규 조성 못지않게 노후 생활권공원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⁵⁾되고 있는 상황임.

【 전국 생활권공원 조성 시기별 현황 】

(단위: 개, %)

구분	생활권공원 수	비율
10년 이내 (지정일: 2016.7.1.~2026.6.30.)	1,032	6.3
10년 초과 ~ 20년 이내 (지정일: 2006.7.1.~2016.6.30.)	4,613	28.1
20년 초과 ~ 30년 이내 (지정일: 1996.7.1.~2006.6.30.)	3,028	18.4
30년 초과 (1996.6.30. 이전 지정)	5,522	33.6
데이터 없음	2,227	13.6
합 계	16,422	100.0

주) 도시공원 지정고시일 기준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도시공원정보표준데이터(최종검색일: 2026.6.30.) 재정리

- 3) 박정아 외, 「노후 도시공원의 리뉴얼을 위한 평가체계 개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53(5), 2025. 10.
이태희 외, 「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 이슈포커스』 2021. 8.
최희선 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연구보고서』 2019-4, 2019. 10.
- 4) 참고로, 2024년 말 기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8㎡로, 법정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6㎡(시행규칙 제4조)를 상회하고 있음.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8.8	9.2	9.6	10.1	10.5	11.0	11.6	12.3	12.6	12.8

※ 자료: 지표누리(출처: 국토교통부 및 도시계획현황)(최종검색일: 2026. 6. 30.)

- 5) 박정아, 이태희, 최희선 각각 앞의 글

노후화된 생활권공원의 경우 공간적 특색, 시설 안전성 및 청결도 등이 미흡하여 이용률이 저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권공원까지의 보도·횡단보도 등 연결체계와 관련된 근린접근성, 진출입로·보행로의 경사로 및 계단 유무 등 보행약자접근성, 출입구 표지판 및 종합해설판 등 안내체계와 관련된 출입구인지성 등의 측면에서 접근성·체계성이 미흡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바,

개정안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주기적인 생활권공원 정비 계획을 통해 양적으로 확충된 생활권공원을 수요자 관점에서 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생활권공원의 활용도·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⁶⁾을 10년 단위로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2025년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개정, 2026. 8. 27. 시행)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⁷⁾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평가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된 점 등을 개정안 심사 시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비교 】

구분	공원녹지기본계획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근거	현행법 제5조	안 제18조의2
수립권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수립주기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5년 주기
수립내용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 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③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④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⑤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⑥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⑦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노후 공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공원시설의 재배치 등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③ 보행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생활권공원의 안전관리 및 이용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개정, 2026. 8. 27. 시행)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공원정비계획이 중복적으로 수립될 우려가 있고, 최근 신설된 도시공원 평가제도를 통해 생활권공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비계획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